

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03. 21(월) 김영해의원외 3
- 나. 회부일자 : 2005. 3. 2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3. 23(수)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3.23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김영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집단민원사항의 해소와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화전대토의 현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게 개정(2003.7.19)된 매각대상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가능케 하여 어려운 영세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 추가 (안 제22조 제2항 제2호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화전대토의 현 경작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집행부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